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0.

발 의 자 : 유상범 · 조배숙 · 장동혁
박형수 · 조승환 · 김은혜
박충권 · 서명옥 · 박수민
곽규택 · 최수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조는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채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.

그러나, 「상법」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「형법」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,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「상법」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(안 제3조).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55조(횡령·배임) 또는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”를 “제355조(횡령·배임),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또는 「상법」 제622조(발기인,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) ①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, 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<u>제355조(횡령·배임) 또는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“이득액”이라 한다)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</u> 1. 2. (생략) ② (생략)	제3조(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355 조(횡령·배임),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또는 「상 법」 제622조(발기인, 이사 기 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)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